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홍 재 회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1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9.

발 의 자 : 홍재희, 신찬호, 한상욱,
박학용, 이충현, 박성호,
최동철, 전철규, 강선영

1. 제안이유

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해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지원 규정 구체화
(안 제6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,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4조

나. 협조부서 : 어르신복지과

다. 입법예고 : 2024. 1. 19. ~ 2024. 1. 23.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양곡”을 “쌀 및 부식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원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중식 지원용 <u>양곡</u></p> <p>3. ~ 7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6조(지원 및 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쌀 및 부식비</u>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

제47조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법 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4.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6.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

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